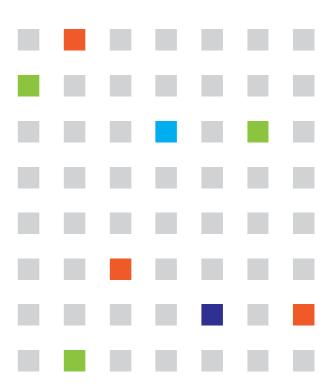


2022년 5월 AML REPORT

- 1. 자금세탁방지 동향
- 2. 자금세탁방지(AML) 제도
 - 고액현금보고 제도



(1) FATF, 전 세계 절반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 기준 준수 안돼~

- □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(FATF)는 여전히 전 세계 절반 가까이 되는 국가에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기준과 체계가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발표
- □ 또한, <mark>회원국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, 자금세</mark> 탁방지 상호평가도 더 자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.
- □ 한국은 2019년 FATF 상호평가를 받았고, 평가 결과에서 "강화된 후속점검" 등급을 받았음
- ⇒ 시사Point : 한국 등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

(2) 미 OFAC, 쿠바제재 위반을 사유로 광산회사에 벌금 부과

- □ 미국 OFAC은 다국적 광산회사인 Newmont에 쿠바 관련 제재(Sanctions)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 1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
- □ Newmont 수리남 현지법인은 광산건설 작업에 필요한 폭발물 자재를 공급할 유통업체를 선정하였고, 이 유통업체는 Newmont 수리남을 대신하여 쿠바 법인으로부터 쿠바산 폭발물 등을 수입한 바 있음
- □ OFAC은 Newmont 수리남 직원이 선하증권 등의 서류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쿠바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, 준법감시인이 제공하는 Sanctions 관련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쿠바 제재와 관련된 기본 적인 사항 등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강조
- → 시사Point : 임직원 대상 제재법규 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교육 증빙 서류(참석자들의 서명 등)도 남겨놓는 것이 필요

(3) 줄줄이 검사받는 코인거래소, 투자자 보호는 반쪽 검증

- □ 금융정보분석원(FIU)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함
- □ FIU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는 지난 2월 코인원, 4월 고팍스에 이어 세 번째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요 검사 목표임
- □ 다만,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근거 법이 없어 투자자 보호 장치 여부는 제대로 살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
- ⇒ 시사Point :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아직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, 고객 보호 장치도 미흡한 것으로 추정
 - (4) 미 OFAC, 러시아 대상 추가제재 시행
- □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과 단체를 제재대상자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함
- □ 추가한 제재대상자 명단에는 다음의 인물들과 법인이 포함되어 있음
 - 러시아 최대은행인 SBERBANK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 8명
 - 러시아 세 번째로 큰 은행인 Gazprombank의 경영진들 27명
 - 모스코바산업은행 및 10개의 자회사
 -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 3개 등
- ⇒ 시사Point : 러시아 관련 거래 시 엄격한 주의의무 이행 및 유의 필요

(1) 개요

□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(CTR)란?

자금세탁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금액*(1천만 원) 이상의 현금거래내용을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하는 것으로, STR을 보완하여 불법금융거래를 차단

- ※ 은행 등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(금액)*에 따른 전산 자동 보고
 - * 5천만원(2006) → 3천만원(2008) → 2천만원(2010) → 1천만원(2019)
- □ 보고대상 거래

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이루어진 현금 입·출금 거래 각각의 합이 기준금액(1천만 원) 이상인 경우

(2) 고액현금거래보고(CTR) 제외대상

- □ 업무편의를 위해 직원이 임의로 현금 거래한 거래
 - 직원이 업무편의를 위해 현금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주의가 필요
 - 전산조작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처리를 한 경우 자금세탁방지업무담당자는 동 거래가 고액현금거래보고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(예 : 공과금, 국고납부 등 업무편의 현금거래)
- □ 대체거래를 고객요청으로 인해 현금 처리한 거래
 - 금융거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의 물리적 이동은 발생하지 않고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발생한 금융거래의 경우는 CTR 제외하고 STR보고(필수)
 - 동일명의의 업무편의 거래가 ④코드로 오류 제외되지 않도록 제외처리 시 주의가 필요 (전산조작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의 현금 처리 거래가 STR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)

(3) 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유의 사항

□ 고액현금거래보고 점검기한 내 점검 및 기한 내 보고 철저

거래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영업점 점검자료 검출 후 4영업일이내에 1차점검(영업점)을 완료해야 함

☞ [영업점]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

- 1. 점검기한 내 모니터링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
- 2. 제외건을 '제외처리'하지 않고 모두 보고하는 등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행되는지 여부 확인
- 3. 보고제외 대상 고객이 임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등으로 확인 된 경우 제외사유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확인
- 4. 현금/대체 조정을 이유로 타인명의 계좌나 타계정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발생되는 지 확인

□ [영업점]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방법 : 검출일 포함 4영업일 이내

① 경로 : 관리정보2 > [은행]자금세탁방지 > 고액현금거래보고 >

고액현금거래점검 > 고액현금거래 점검/결재현황

② 일자 : 거래일자(콤보박스) 및 점검 대상기간 지정

③ 사무소 : 영업점 지정

④ 조회구분 : 점검기한초과현황 조회

⑤ 우측 상단 조회 버튼 클릭 후 점검기한 초과 여부 점검

